

선수위원장 선거관리지침



경기도장애인탁구협회



선수위원장 선거관리지침

2024. 09. 10

제1조 (목적) ① 본 지침은 대한장애인탁구협회(이하 “협회(연맹)”라 한다)의 선수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제2항에 의한 시·도지부의 선수위원장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선수위원장 선거에 관한 사항은 이 지침이 정한 것 이외에는 협회 선수위원장 선거관리규정을 준용하며, 필요에 따라 별도세칙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 (선거사무 관장) 선수위원장 선거사무는 시·도지부 사무국에서 관장한다.

제4조 (선거사무) 시·도지부 사무국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선거공고
2. 선거인 명부 확인 및 관리
3. 입후보등록 고지
4. 선거권 및 피선거권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검토 및 조치
5. 선거운동의 제한, 정견발표에 관한 관리
6. 투표용지에 관한 업무
7. 선거(투·개표)에 관한 업무
8. 선거의 연기 및 재선거에 관한 업무
9. 선거 이의신청에 관한 업무
10. 공명선거에 관한 업무
11. 당선자 보고 및 선포
12. 선거지침 유권해석 등에 관한 업무
13. 기타 선거업무 제반사항에 관한 업무

제5조 (선거일 등의 공고) ① 선거일이 확정되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해당 시·도지부와 중앙협회 및 시·도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에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선수위원장 후보자 자격요건) 협회(연맹)에 등록된 시·도지부 소속의 선수이어야 한다.

제7조(선수위원장 후보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선수위원장 후보자가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3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3의3.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 제2편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사람
-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 다.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5. 도의원
6. 사회적 물의, 장애인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

제8조(선수위원장 후보자 등록 및 공고) ① 선수위원장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까지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지정된 제출처에 위원장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선수위원장 후보자 등록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2. 이력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3. 스포츠윤리센터에서 발급하는 징계사실유무확인서 1부
- ② 시·도지부 사무국은 선수위원장 후보자를 선수위원장 후보자 등록부(별지 제4호 서식)에 등재한 후 접수증(별지 제5호 서식)을 교부한다.
- ③ 선수대표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에 선수위원장 후보자 명단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해 해당 시·도지부와 중앙협회 및 시·도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9조(선거인명부 작성) ① 사무국은 선수위원장 후보자 접수 이후 선거인명부(별지 제7호 서식)를 비치하여야 한다.

- ② 선거인명부는 선수위원장 후보자에게 열람을 허용한다.

제10조(선수위원장 후보자 정견발표) 선수위원장 후보자의 정견발표는 제11조 선거방법에 따라 대면 정견발표 또는 SNS 등 온라인을 통한 정견발표를 할 수 있으며, 발표 방법 및 일시·장소에 대해서는 후보자의 합의를 통해 정한다.

제11조(선거방법) ① 투표는 투표소를 이용한 직접투표 또는 온라인시스템을 활용한 전자투표로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이를 혼용할 수도 있다.

- ② 투표는 선거인의 직접투표에 의한 1인 1표로 한다.
- ③ 전자투표에 관한 방법 및 절차는 시·도지부 회장이 따로 정하며, 투표자의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 내지 제16조에 관한 사항도 포함한다.

제12조(투표용지) ① 투표용지(별지 제8호 서식)는 시·도지부에서 선거일 전일까지 준비하여야 한다.

- ② 투표용지에 인쇄할 후보자의 기호는 “1, 2, 3”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
- ③ 시각장애선거인에게는 별도의 투표보조용구를 제공할 수 있다.
- ④ 제2항의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 등록(접수) 순서에 의한다.

제13조 (감표위원 선정) 투표 감표를 위한 감표인은 선거인단 중 3인으로 선정한다.

제14조 (투표) ① 투표인은 감표자의 참여하에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인 명부에 서명하고 투표용지 1매를 받아야 한다.

② 투표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서 기표를 한 후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않게 접은 후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제15조 (참관인 선정) 각 후보자는 필요할 경우 개표참관인 1인을 선정하여 선거인 전일 까지 협회(연맹) 사무국에 등록(별지 제9호 서식) 할 수 있다.

제16조 (무효투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후보자의 난에도 기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인 이상의 후보자의 난에 표를 한 것.
4. 어느 후보자의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6. ○표 이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7. 선거인 자신이 투표용지를 공개한 것.

제17조 (선수위원장의 선출) ① 선수위원장은 협회(연맹)에 등록된 선수 중 시·도지부 소속 선수들의 직선제로 선출한다.

② 선수위원장 선출방법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선수위원장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2. 다수 득표자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3.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투표를 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18조 (선출무효) 선수위원장은 선임 후에도 제7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촉된다.

제19조 (개표결과 보고서 작성) 감표인은 개표가 끝난 즉시 개표결과 보고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 날인 후 시·도지부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선수위원장 당선인 공고) 시·도지부 사무국은 선수위원장 당선인이 결정되면 선거일 다음날 즉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거 선수위원장 당선인을 해당 시·도지부와 중앙협회 및 시·도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부당 선거활동 금지) ① 선수위원장 입후보자는 다음 각호의 해당 행위를 금지한다.

1. 특정인의 인신공격 등 중상비방을 하거나 서명날인 운동을 주동, 선동 또는 참여하는 행위
2. 선거에 관하여 금품수수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3. 허위의 이력을 기재하여 배포하는 행위
4. 기타 시·도지부에서 공지한 사항

② 제1항의 부당 선거활동 금지사항 행위를 하여 적발된 자에 대하여 법제·상벌위원회 결정에 따라 제재할 수 있으며, 제재내용은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16조에 의한다.

부 칙(2024. 09. 1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회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